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33호 2002. 8. 17)

총무위원회
2002. 9. 14(토)

1. 심사경과

- 가. 2002. 8. 17 사천시장 제출
- 나. 2002. 8. 19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2. 9. 11 사천시의회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요지(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가. 제안이유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개정('98. 1. 5) 이후 동결된 분뇨관련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시민에 대한 분뇨수거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별표3)

(단위 : 원)

행정구역	부과기준	계	수수료	처리장사용료
사천시전역	18ℓ	230	200	30

- (2) 정화조등청소수수료(별표)

(단위 : 원)

행정구역	요금기준	용량	계	청소료	처리장
사천시전역	기본요금	0.75m ³	13,295	12,295	1,000
	초과요금	0.1m ³	950	800	150

- (3)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중 “기초생활보장법의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함(안, 제11호 제1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명돈)

-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가 '98년 1월 5일 인상 개정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98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화시키는 것이며,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1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해당조례 개정은 현실에 맞고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의원	질의 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최갑현 위원	○수수료 인상을 위해 업체의 재무재표 등을 받아 원가측정을 하였을텐데 그 방법은?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업체별 수지계산서를 받고,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원가계산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인건비 등 총괄적인 실사를 통하여 계산하였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